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2015. 7. 1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어려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3조)
- 다.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제4조)
- 라. 지원요청 및 신고(제5조)
- 마.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33, 참조 : 의회사무국장,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구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북구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잊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
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
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
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
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